#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40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김주영·박 정·이용우

문진석 · 김태선 · 안호영

박홍배 · 이학영 · 강준현

김형동 • 문정복 • 박균택

이기헌 · 손명수 · 정태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 법률 제 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근로기준법」 제43 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u>경우</u> 피해자의 명	<u>경우(「근로기준법」 제</u>
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제기할 수 없다.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